####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 2023-02 호

### [군산해양경찰서]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

다음 장소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

2023년 6월 20일 군산해양경찰서장

### 1.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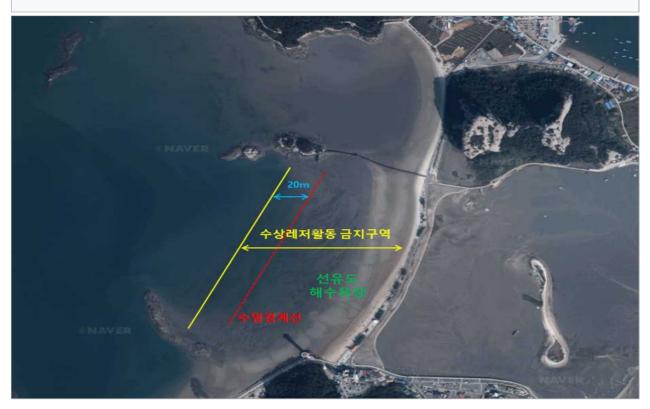
장 소	금지기간	금 지 구 역(WGS-84)	금지대상
선유도 해수욕장	해수욕장 개장기간	수영경계선 바깥쪽 20미터 안의 해역	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
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	연 중	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〈다음 각 호의 해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〉 A: 35°48′41.83″N, 126°28′04.10″E B: 35°48′11.67″N, 126°28′19.80″E C: 35°48′13.93″N, 126°29′11.15″E	모든 수상레저기구
비응항 주변해상	연	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주변 해상 〈다음 각 호의 해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〉 A: 35°56′05″N, 126°31′31″E B: 35°55′41″N, 126°31′05″E C: 35°55′41″N, 126°31′48″E	모든 수상레저기구
직도 주변해상	연 중 * 단 사격 계획이 없는 주말만 허용	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3해리권 해상	모든 수상레저기구 * 단, 통신장비 및 위치발신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중인 수상레저기구는 허용
		<ol> <li>통신장비</li> <li>초단파대 무선설비(VHF 또는 VHF-DSC)</li> <li>위치발신장치</li> <li>선박자동식별장치(AIS), 선박패스(V-PASS), VHF-DSC,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내비게이션) 중 1개</li> </ol>	

- 2. 문 의 처: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(☎ 063-539-2251)
- 3. 참고사항: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「수상 레저안전법」 제6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4. 재검토기한: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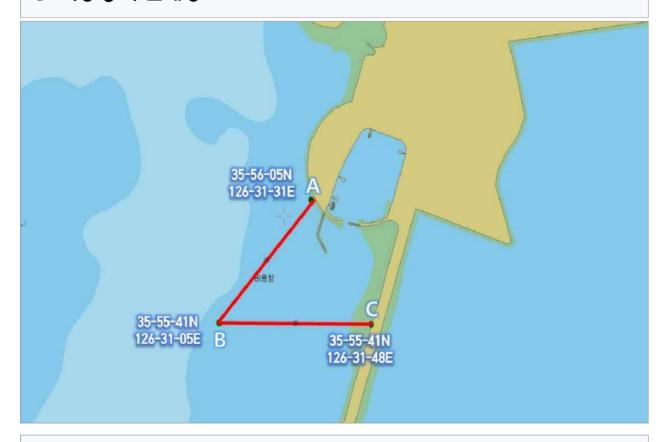
# ○ 선유도 해수욕장



# ○ 신시도 배수갑문 해상



## ○ 비용항 주변해상



### ○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3마일권 해상

